

# 의정부소방서, 구급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추진

소방신문 | 승인 2024.08.05 17:03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

중증도 분류	환자	사태	이송 의료기관
Level 1 중증	목격자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상태	심정지, 무호흡, 무맥박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Level 2 중증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중대한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처치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뇌종양, 폐색전증, 중독, 화상, 동맥류 파열	응급의료기관
Level 3 중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전행할 수 있는 일차적 가능성일 고위험에 처한 경우	중증천연호흡기질환, 중증 당뇨병	응급의료기관
Level 4 중증	환자의 사지, 통풍이나 저혈당 또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2시간 이내 처치나 처치가능 시정할 수 있는 상태	30도 이상 발열 동반 감염, 뇌졸중 동반 요로감염	응급의료시설
Level 5 중증	간단하지만 응급 처치 필요, 안정적인 상태로 전행 가능하나,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	골절, 탈臼, 탈장, 변비, 치아(안정) 문제	일반 병·의원

**다음사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

- 환자 증상 및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처치 가능 여부 등
-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응급실 진료능력(사망·중환자율)

- 구급대원은 119번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환자의 상태, 중증도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이용이 원칙입니다.
-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 응급실 진료용어는 환자의 중증도에 의해서 내원수업(119구급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소방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이제 멈춰주세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여 엄정 대응합니다.

의정부소방서는 8월 2일, 의정부시 응급의료협의체의 협력으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부지대병원, 의정부백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추병원'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및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119구급차를 올바르게 이용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19구급차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캠페인에는 포스터, 리플렛, 온라인(SNS) 광고 및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의 홍보를 포함한다. 주된 내용은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병원을 선정하는 방법과 119구급차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이 담겨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진행된다. 올해 의정부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들에게 대한 존중과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처벌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문태웅 의정부소방서장은“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119구급차 이용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늘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이 폭행 위험에 항시 노출된 점에 대해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존중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소방신문** [sobangnews@empas.com](mailto:sobangnews@empas.com)

---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